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16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임호선 · 윤준병 · 어기구
주철현 · 이병진 · 문금주
문대림 · 이원택 · 서삼석
임미애 · 송옥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해양이용·개발사업자,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해양이용·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

5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3항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8조제3항 후단 또는 제41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의2. 제29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2조(벌칙)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28조제3항 후단 또는 제41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29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4. ~ 6. (생략) 제54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제52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4. ~ 6. (현행과 같음) 제54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8조제3항 후단 또는 제41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2. · 3. (생략) <u><신설></u> 4. ~ 7. (생략) ④ · ⑤ (생략)	<u>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u> 2.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29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u> 4. ~ 7.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